

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.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.

## 노숙자, 외국인 근로자 무료로 입원·수술 가능해져

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.

사업비는 46억 원(복권기금)이 투입될 예정이며,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.

지금까지 지방공사의료원,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및 다일천사병원, 라파엘클리닉 등 민간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, 주로 감기 등 경미한 질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.

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 등에 대하여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무료진료가 활성화 되고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.

또한, 보건복지부는 무료진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료진료 시행 병원에 환자 등록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,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.

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.



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 원 이내로 하고,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무료진료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(6개소), 지방공사의료원(34개소)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·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,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하였다.

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